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106.9)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계약번호	52132112620000
계약자	(이름) 통영요양원더진시니어타운 (817-80-00716) (주소) (사업장) 경남 통영시 여항로 400-8 A동 101호~401호 (복신동, 진우프라자)
보험기간	2021.11.29 ~ 2031.11.29 (10년)
청약일	2021.11.29
1회 보험료	936,244원(월납) [기본:72,044원 + 특약:864,200원]

보장내용 건물(1/1)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담보별 보장내용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II(대물 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0	5,774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II(시망및후유장해 1인당)		150,000,000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II(부상 1인당)		30,000,000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손해(건물(실손))	10년납 10년만기	1,410,000,000	66,270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300,000,000	265,42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인당)		30,000,00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000,000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	598,780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500,000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50만원